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67호 2020. 11. 26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「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」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0-1402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「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」 입법예고

「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예 천 군 수

1. 폐지이유

규칙으로 정한 공영자전거 기본이용요금을 조례로 신설하고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

3. 폐지규칙안

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마. 입법예고 : 11월 중 실시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 사항 등
-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 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ykim3659@korea.kr
 - 2) 주소 :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7길 25-4,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
 - 3) 팩스 : 054-650-8975
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 스마트도시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문의전화 : 054-650-8975)

예천군 규칙 제 호

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☐ 자 치 법 규 명 :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

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

(제 정) 2019.04.29 규칙 제125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원 유형별 가입비 및 이용요금) ① 「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·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제2항의 회원 유형별 가입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.

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
부 칙 <규칙 제1254호, 2019. 4. 2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